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받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정기결제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것
2. 정기결제 사업자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것
3.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신용카드업자 및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할

것

가.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조건 중 유료전환, 결제금액 변경관련 일정 등을 대금 청구 및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나.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카드등에 의한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에 있어 신용카드회원등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분쟁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결제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결제대행계약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제19조의21제1항 중 “7일”을 “14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7의4호 중 “등록·변경등록 여부”를 “등록 요건의 심사, 등록·변경등록 여부”로 하고, “접수”를 “접수,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요건의 확인 및 등록 취소의 건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7조의4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 요건) ① ~ ③ (생 략)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 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다만, 법 제3 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신 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 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정 기적으로 금액을 지불받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대행업체 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정 기결제 사업자”라 한다)에 대 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 래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 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

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것

2. 정기결제 사업자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것

3.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신용카드업자 및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할 것

가.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조건 중 유효전환, 결제금액 변경관련 일정 등을 대금 청구 및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나.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등에 의한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환불방법에 있어 신용카드회원 등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분쟁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결제 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결제대행계약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제19조의21(보고사항) ① 법 제54

제19조의21(보고사항) ① -----

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7일</u>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 7의3. (생략)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u>등록·변경등록</u> <u>여부의 통보</u>, 등록말소 및 임원선임·해임 보고의 <u>접수</u> 7의5. ~ 13. (생략) ②·③ (생략)	----- ----- ----- <u>14일</u>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① ----- ----- ----- ----- ----- -----.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 ----- ----- <u>등록 요건의 심사</u>, <u>등록·변경등록 여부</u>----- ----- <u>접수</u>, 법 <u>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u> <u>취소 요건의 확인 및 등록 취</u> <u>소의 건의</u> 7의5.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연 락 처	(02) 2100 - 2992